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0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30

-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-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760	2009.1.30	2009.2.4	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9.2.19)	원안 동의

3. 제안이유 및 요지 (도시계획국장 송득범)

가. 제안 이유

-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현황에 맞도록 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 요지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공 원	역사공원	마포구 합정동 139-21일대	-	증)4,804	4,804		
신설	공 원	어린이공원	마포구 현석동 1-5일대	-	증)1,622	1,622		
신설	공 원	문화공원	마포구 창전동 165-5일대	-	증)2,429	2,429		
신설	공 원	문화공원	마포구 신정동 76-1	-	증)1,638	1,638		
신설	공 원	문화공원	마포구 당인동 27-9	-	증)301	301		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역사문화미관지구, 공공공지

5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- 가. 주민의견청취 (2008.1.31~2.14) : 의견 없음.
- 나. 구의회 의견청취 (2008.9.4) : 원안 동의
- 다.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2008.11.13) : 원안 가결

6. 관련부서 의견

- 의견 없음.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

- 공원이 기 조성된 곳으로 체계적으로 공원관리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8. 기 타

- 토지현황 : 15필지 10,794㎡
  - 구 유 지 : 8필지 9,659㎡ (89.5%)
  - 시 유 지 : 2필지 516㎡ (4.8%)
  - 국 유 지 : 5필지 619㎡ (5.7%)

- 건물현황 : 없음.
- 재원조달방안 : 없음(비예산).

9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- 본 안건은 마포구 합정동 139-21외 4개소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,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이나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현황에 맞도록 공원으로 결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안임.
- 구체적으로 마포구 합정동 139-21일대 4,804㎡는 역사공원으로, 마포구 현석동 1-5일대 1,622㎡는 어린이공원으로, 나머지 3개소인 마포구 창전동 165-5일대 2,429㎡, 마포구 신정동 76-1 1,638㎡, 마포구 당인동 27-9 301㎡는 문화공원으로 각각 결정하려는 것임.
-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에 대하여 시설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고 있고, 별도의 재정투자도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원으로의 변경 결정에 따른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공원의 세부유형을 역사공원, 어린이공원, 문화공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은 공원의 위치 및 인접지의 여건, 공원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만, 공공공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제 때 공원시설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건축제한 등 토지이용규제의 차이가 없어 주민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, 구청장에게는 소규모의 공원도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 사료됨. 소공원, 어린이공원, 문화공원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원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1. 토론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12. 심사 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.....